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이상목

전화 055-259-4302 / 팩스 0502-193-7270

# 보도자료

2023. 11. 20. (월)

### 제 목 장기간 대규모 성매매에 제공된 차명 건물 몰수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
-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(지청장 박대범)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매매 집결지의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1997년부터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두 차례나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, 2009년 단속장소 바로 맞은편 건물을 ‘배우자 명의’로 매수하여 차명 보유하면서 3명 이상의 성매매업자들에게 제공하여 온 사실을 확인 하였음
- 검찰은 장기간 성매매 관련 범죄를 반복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는 성매매의 물적 기반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성매매알선에 사용된 부동산 몰수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유죄 및 건물 몰수 확정 판결이 선고되었음
- 또한, 위 건물이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어 몰수 집행이 되지 않자 몰수·추징 TF를 구성,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'23. 11. 10. 국가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등 철저한 집행으로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음
- 마산지청은 향후에도 불법 은닉재산을 추적하고,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하며, 범죄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노력하겠음

# 1

## 성매매 알선 사건 개요

### 1] 피고인

- A(64세, 성매매 건물 임대인), B(46세, 성매매업자), C(49세, 성매매업소 관리책)

### 2] 범죄사실 요지

- (A) '20. 4. ~ 5.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처 명의 건물<sup>1)</sup>을 소유하면서 이를 B에게 성매매 업소로 임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  
※ '09년 A가 건물 매입 후 3명 이상의 성매매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, 이미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보강증거가 없어, 혐의가 명백한 본건 범죄사실만 특정하여 기소
- (B, C) 공모하여, '20. 4. ~ 5.경 B는 위 A의 처 명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C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는 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
- (B) '20. 4. ~ 5.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A의 처 명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

### 3] 수사 및 재판 경과

- '20. 9. 18. 경남지방경찰청, 사건 송치
- '20. 12. 7. 마산지청 A, B, C 각 불구속 기소
- '21. 7. 22. B, C 유죄 확정(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 등), A 항소제기
- '22. 7. 6. A, 유죄(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), A의 처 명의 건물에 대한 몰수 확정  
※ 검찰은 A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2회 처벌받은 점, 본건 부동산을 과거에도 계속해서 성매매 영업에 제공하고 임대료 수익을 얻어왔던 점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 몰수 필요성을 적극 주장,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 인정하며 건물 몰수 선고

1) 첨부 사진자료 참조

### 1]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몰수·추징 집행 TF 구성

- '23. 3. 범죄수익의 종국적 환수를 위해 마산지청 형사 2부장(팀장), 마산지청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및 수사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몰수·추징 집행 TF를 구성, 몰수·추징 판결 선고에 대한 실질적 집행을 필요한 사건 일제 점검
- 본 건에서 몰수 판결이 확정된 건물이 A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어 집행되지 못한 사정을 확인하여 채권자대위소송 착수

### 2] 환수 경과

#### ○ 채권자대위소송 진행경과

- (소제기) '23. 4. 4.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A를 대위하여 A의 처를 상대로 '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, 성매매알선에 사용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A 명의로 경료하라'는 취지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
- ※ 당청 범죄수익환수 TF 담당 검사 및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, 본 건물이 명의 신탁이 아니라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자료제출 등 적극적 소송수행
- (승소 및 확정) '23. 8. 10.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원고(대한민국) 전부 승소 판결 선고, '23. 9. 6. 판결 확정
- (국가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) '23. 11. 10.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, 국가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하여 몰수 집행 완료

#### ※ 채권자대위소송

-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의 권리로,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
- 국가가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명의가 명의신탁 등의 이유로 피고인 명의가 아니라면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므로, 본 건에서는 국가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해야만 국가가 피고인을 상대로 몰수 판결을 집행할 수 있음

### 3

## 의의 및 향후 계획

- 성매매알선에 제공된 건물로 범죄수익이 명백하나 법원의 몰수 선고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이유로 실제 집행이 불가능하였던 차명재산에 대해 채권자 대위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국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종국적으로 환수하였음

※ 본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약 5,300만 원(23. 3.기준)이나,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'문화공원 조성사업'의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몰수의 집행 필요성이 현저하였음

- 마산지청은 향후에도 불법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, 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엄단하며,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범죄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

[별첨 : 몰수된 성매매 제공 건물 사진]



성매매에 제공된 건물(건물 전체)



부속된 주차장



성매매 고객행위를 하는 속칭 '쇼룸' 및 성매매시 활용되는 타이머 부착 모습



건물 1층에 있는 밀실의 전경



건물 2층에 있는 밀실로 올라가는 입구



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졌던 밀실 내부